제18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23년 제18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18일

소방청장

Ⅰ. 시험개요

1 시험일정

시험공고	원서접수	필기시험 (1·2차)	필기 ^{1차} 합격발표	최종 합격발표
10. 18.(수)	10. 25.(수)~10. 27.(금)	11. 25.(토)	12. 5.(화)	12. 29.(금)
119고시	119고시	공주 중앙소방학교	119고시	119고시

※ 원서접수 결과 응시인원 등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 시행할 수 있음

2 응시자격

가. 응시대상: 소방공무원

나. 응시자격: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※ 필기시험 전일까지 교육 이수가 가능한 사람 포함

구분	응시자격					
제1차 시험	① 「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6조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*을 이수한 사람					
	* 소방교육기관(중앙·지방소방학교 및 시도에서 설치·운영하는 소방교육대를 말함) 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					
	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※ 필기시험 전일까지 교육 이수가 가능한 사람 포함					
제2차 시험	①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					

3 시험방법 (시험 당일 연속 시행)

가. 제1차 시험 : 선택형(객관식), 4지 1선택형

나. 제2차 시험 :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 혼용 가능

4 시험과목 ※ 2023년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실무 교재 內

구 분	과 목	문항	
-11 . 41 . 1 41	화재조사론(화재조사 관련 법령, 방·실화 수사실무, 피해액산정, 현 장조사 진행 요령, 조사서류 작성)	각 25문항	
제1차 시험	화재학(연소이론, 화재론)	(총 75문항)	
	화재원인판정(발화원판정, 출화개소판정)		
제a+l 니칭	화재감식학(구조물·전기·가스·차량·화학물질화재 및 미소화원감식)	각 3문항	
제2차 시험	화재조사실무(현장감식, 발화기기별 감식, 기자재사용법)	(총 6문항)	

5 시험과목 면제기준

- 가. '22년(제17회) 1차 시험 합격자는 금회 1차 시험 면제
- 나. 화재조사 업무에 관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은 제1차 시험과목 중 화재원인판정과 제2차 시험과목 중 화재조사실무를 면제

【화재조사 업무경력 인정 범위 및 증명 방법 】

● 『화재조사 업무경력 인정범위』

- 화재조사 전담부서에서의 근무경력
- 화재조사 관련부서에서 사무분장에 의한 화재조사 근무경력
- 인사기록이나 사무분장에 명확한 화재조사 담당기록은 없으나 화재조사 관련보고서 등의 공식 문서기록에 의해 실질적으로 화재조사업무 수행 사실이 증명가능한 근무경력

②『실질적 화재조사 근무경력 증명방법』

- 화재조사 관련 보고서 등의 공식 문서기록에 의거 화재조사업무 수행 사실의 기산 및 종료 시점을 판단하여 근무 경력기간 산정
- <u>화재조사업무 경력 증명원[서식 1]을 사용</u>하여 근무 경력지 소방관서장 확인·발급 ※ 응시자 現 소속기관장이 과거 근무이력 등 일괄확인 후 발급

❸ 화재조사 근무경력기간(2년) 산정방법

- (기준일) 원서접수 전일(2023. 10. 24.) 기준으로 계산

Ⅱ. 세부일정

1 **원서접수** (119고시 인터넷 접수만 가능)

1차 시험 면제자도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2차 시험 응시 가능

- 가. 접수기간: 10. 25.(수) 10:00 ~ 10. 27.(금) 18:00
 - ※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, 접수취소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
- 나. 접수대상: 응시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
 - ※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을 무효로 처리함
- 다. 접수방법: 119고시(http://119gosi.kr) 접수
- 라. 수 수 료: 없음
- 마. 서류제출 ※원서접수 시 PDF파일 업로드
 - 1) 교육 수료증* 사본 1부
 - *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합산하여야 8주 이상의 교육기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별 수료증 사본 각 1부
 - 2) 시험과목 면제자는 화재조사 업무경력 증명원 제출

【 서류제출 시 참고사항 】

- ① '23년(제18회) 시험 신규 응시자는 교육수료증 사본(필수) 및 업무경력 증명원(해당자) 제출
- ② 제1회 ~ 제17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2023년(제18회)시험 응시자격 (과목면제)에 변동이 없는 자는 서류제출 면제(소방청에서 확인 예정)
- ❸ 응시자격이 변동된 경우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으로 유선(☎ 044-205-7290) 연락
- 바. 접수확인: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 확인(로그인 → 마이페이지)

☑ 원서접수 유의사항

- 사진기준: 반명함(3cm×4cm), 사진 파일(JPG, GIF, PNG, DMP), 해상도(100DPI 이상)
- 사진등록: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* 등록 시 불이익 발생
- * 배경이 있는 사진, 스냅사진,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, 얼굴이 잘려 나온 사진, 동물·식물 사진,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
- 응시자 개인정보 불일치(허위 작성, 오기, 누락), 연락 불능, 응시자격 미충족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- ·시험실시권자는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응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

2 필기시험

가. 장소공고: 11. 8.(수) 14:00 / 119고시 누리집

나. 시험일시: 11. 25.(토) 10:00 ~

구분	입실 완료시간	시험시간	문제유형	시험과목
1차	09:30	10:00~11:15 (75분)	객관식(4지 1선택) 과목당 25문항	화재조사론, 화재학, 화재원인판정
2차	12:30	13:00~15:00 (120분)	주관식 과목당 3문항	화재감식학, 화재조사실무

다. 시험장소: 중앙소방학교 및 제주소방교육대 예정(응시인원에 따라 결정)

라. 준 비 물: 응시표, 신분증, 필기도구(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)

3 출제문제 문의

가. 운영기간: 11. 25.(토) 16:00 ~ 11. 26.(일) 24:00

나. 문의방법: 원서접수사이트 119고시에서 신청

다. 문의절차: 로그인 → 문제/정답 → 문제/정답 이의제기

라. 문의내용: 비공개 출제문제 오류, 복수정답, 정답없음 등 문의

※ 시험문제 공개 요구 또는 전화 문의는 받지 않음

4 합격자 발표

가. 1차 시험: 12. 6.(수) 14:00 / 소방청 및 119고시 누리집

1) 공고내용: 필기시험 합격자 및 실기시험 접수 안내 등

2) 합격기준: 100점 만점 중 매 과목 40점 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

나. 2차 시험: 12. 29.(금) 14:00 / 소방청 및 119고시 누리집

1) 공고내용: 최종합격자 발표

2) 합격기준: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, 채점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

※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처리함

Ⅲ. 기타 안내사항

1 일반사항

가.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
☑ 신분증 인정 등 유의사항

- ▶ 인 정: 소방공무원증,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, 운전면허증, 기간만료 전 여권
- ▶ 불인정: 자격수첩,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, 신분증 사진 ※ 응시표 출력 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지참할 것
- 나. 응시자는 공고문에 **명시된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**하여야 하며 (이후 입장 불가), 공고된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**응시 포기로 간주함**

☑ 시험장 폐쇄시간 및 유의사항

- ▶ 시간 기준: 10:00 시험은 09:00에 개방하여 09:30:00까지 입장 가능 09:30:01부터 시험실시 건물 주 출입구 폐쇄
- ▶ 입구 기준: 자격시험기관이 지정한 출입구 기준
- ▶ 응시자는 시험장의 위치, 교통편, 이동 소요 시간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, 시험 전날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음
- ▶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이 불가함
- 다. 시험공고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119고시 및 시도 소방본부 누리집에 공고함. 공고내용 및 공지사항(시험일시, 장소 등)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
 - ※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 방침에 따라 시험 일정이 긴급하게 변경될 수 있음
- 라. 모든 시험은 우천,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, 부득이한 경 우에는 별도로 시험장소와 일정 등을 공지함
- 마. 응시자는 시험장 물품 등 파손,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, 소지품 분실 등 시험장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람
- 바. **응시자격 요건**이 적합하지 않은 응시자의 **시험결과는 무효 또는 취소**될 수 있으며, 책상, 벽 등에 필기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

2 답안지 작성 및 부정행위 등 안내

- 가. **개인별 성적은 답안지 전산 판독 결과**에 따르며, 답안지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음
- 나. 답안은 문항마다 **반드시 하나의 답만**을 골라 그 숫자에 "●"로 표기하여야 하며,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때는 표기한 답안을 **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** 작성할 수 있음
 - 1)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때는 **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**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함 (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)
 - 2)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판독 결과 등에 대한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

☑ 채점오류(귀책 사유) 사례

- ▶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
- ▶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
- ▶ 답안지 여백 낙서, 훼손 등으로 채점 불가한 경우
- ▶ 예비표기 하여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
- ▶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이외 필기구(연필, 샤프, 적색펜 등) 사용한 경우
- ▶불량 또는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사용으로 마킹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
- ▶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(▮▮ ▮▮▮)를 훼손한 경우
- ▶ 수정테이프 사용 후 번짐. 뜯김 등이 발생한 경우

<보기> 올바른 표기 : ● 잘못된 표기 : ♡ ♡ ● ● ⑩ ○ ② ② ③

다. 답안지는 본인의 응시표를 확인 후 직접 기재해야 함

- 1) (필적감정용 기재)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본인의 필적으로 직접 작성
- 2) (자필성명) 본인의 한글 성명을 정자로 직접 기재해야 함.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불이익(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)을 받을 수 있음
- 3) (교체답안지 작성) 답안지를 교체하면 반드시 필적감정용 기재란, 자필성명, 응시번호, 생년월일 등을 빠짐없이 작성(표기)해야 하며 작성한 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함

- 라.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 모든 통신기기나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 으며 문제지 배부 후 발견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됨
 - 1) 휴대용전화기, 디지털카메라, MP3 플레이어, 전자사전, 카메라펜, 카메라 안경, 라디오,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, 무선호출기, 이어폰, PDA, 스마트워치, 전자계산기, 전산기기, 테블릿 PC 등
 - 2) 통신장비를 소지한 응시자는 시험실시 전 전원을 끈(off) 후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하며,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문제지 배부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됨
- 마. 문제지 배부 후 시험 시작 전에 문제지를 열람하는 행위,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
- 바. 응시자는 문제지의 **과목순서대로 답안지에 표기해야 하며**,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때도 답안지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 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람
- 사. **시험시간 관리**의 모든 책임은 **응시자 본인**에게 있으며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
- 아. 답안지에 성명, 생년월일, 응시번호, 시험감독관 서명, 필적 감 정용 기재란을 기재하지 않아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**무효** 답안으로 처리함

☑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무효답안처리 기준

- 부정행위자 조치: 「소방공무원 임용령」 제51조 준용
- 시험지(문제지, 답안지)가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에 입실하는 행위
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대화하는 행위
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
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-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-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
-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- 자. 시험(필기·실기)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함

차. **2차 시험**에 한하여 **화장실을 이용**할 수 있으며, 다음의 사용 원 칙과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

☑ 화장실 사용 준수사항

사용원칙

사용시간: 13:30 ~ 14:40 (시험시작 30분 이후 ~ 시험종료 20분 전)
※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

• 사용횟수 : 1인당 1회에 한함

사용절차

• 시험 중 손을 들어 화장실 사용 요청(소음주의)

※ 사용자가 많은 경우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순서대로 1명씩 이용

- 문제지와 답안지를 뒤집은 후 복도로 이동, 복도감독관과 동행하여 이동
- 응시자 소지품 검사(동성 복도감독관이 실시): 주머니를 뒤집어 감독관에게 보여 줌
- 복도감독관이 지정한 화장실 및 용변 칸 사용
- 화장실 사용 후 복도감독관이 소지품 검사 재실시
- 복도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시험실 입실

유의사항

- 사용 시간대 외 및 제한 횟수를 초과하여 화장실 사용 시 재입실 불가(운영본부 대기)
- 시험 관련 자료 등 소지, 화장실 내 시험 관련 내용 기재 등의 경우 부정행위로 적발
- 시험 중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은 본인 좌석에서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한 시점 기준 ※ 2차 시험 14:39:59에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한 경우 화장실 사용 및 재입실 가능
- 카. 기타 문의는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람
 - 필기시험: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☎ 044-205-7287~7294
 - 인증서 발급: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☎ 044-205-7475 <문의방법> (평일 근무시간 : 09:00 ~ 18:00 / 점심시간 제외)

화재조사 업무경력 증명원							
① 성 명		-		• -	② 소 속		본부
③ 계 급					④ 생년월일		소방서
-1-4	⑤ 경력기간 (총	년	월	일)	⑥ 근무부서 및	직위	⑦ 담당업무
화재 조사 업무	-	(년	월	일)			
경력	-	(년	월	일)			
사항	_	(년	월	일)			
이 증명은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의한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를 위한 것이므로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 사실과 다른 때에는 본인의 응 시자격 취소처분은 물론 공사문서의 위조·변조, 동 행사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근무 경력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니 위 경력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 년 월 일 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.							
소속	기관장 :			년	월 일		
							작성자 직·성명
소빙	청장 귀하						(서명 또는 인)

[서식 2]

필기시험 문제문의서

문 제 문 의	성 명	응시번호			
연 락 처	휴 대 전 화				
한 즉 시	전 자 우 편				
응 시 분 야	응 시 시 도				
	응 시 분 야				
문 의 과 목	해 당 과 목				
	문 항 번 호	번			
ᄼᅔᆊᄆᆌᄾ					

<출제문제>

<사유 및 관련근거> - 사유 및 관련근거 반드시 기재

<응시자 의견>

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

1. 접수자 인적사항							
			0 N 게 그				
시 험 명			응 시 계 급				
성 명			응 시 번 호				
전 화 번 호			휴 대 전 화				
2. 정정 신청 내용							
	분	정정 전	<u> </u>	정정 후			
성	명						
ᄌ 미 드 로	нξ						

3. 정정 사유

4. 첨부: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)

(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전후 사실이 확인 가능할 것)

2023년 월 일

신청자: 서명 또는 인

소방청장 귀하